

□ 사건의 개요

사 건 명	청구이의
판결선고일	2011. 4. 7.
쟁 점	청구이의의 소의 대상

□ 사건의 경과

1. 원고는 한약재 제조·도매업자로서 피고로부터 한약재를 공급받아 옴.
2.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2회에 걸쳐 원고를 대신해 결제한 어음대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여,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됨.
3. 이후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,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.
4. 위와 같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, 위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, 위 지급명령상의 물품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원고 운영의 법인의 채무이며, 실제 채무액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, 위 강제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.

□ 판결의 요지

-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,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은 집행력을 배제한 원고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개개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집행권원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개의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는 전부청구와 일부청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,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.
-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동산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.